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73 발의연월일: 2024. 7. 2.

발 의 자: 송옥주·정성호·이병진

황명선 • 한정애 • 박홍근

박해철 • 전용기 • 한민수

이해민 • 박 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근로기준법」과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,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음. 이에 현행법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 한해, 9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0일의 출산휴가 중 첫 5일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한편, 남성의육아휴직 비중은 2023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27.1%로 여성 근로자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, 여전히 출산·양육이 여성에게 전담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

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산·양육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진다는 기업의 인식과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할 것임. 이에 출 산전후휴가기간(90일)에 비례하여, 배우자의 충분한 자녀 양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의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 고자 함.

이를 위하여, 출산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을 기존의 첫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한편, 더욱 많은 근로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지원대상을 '우선지원 대상기업'으로 제한하던 것을 '「대・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기업'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・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(안 제76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7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"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"를 "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(이하 "대기업"이라 한다)인 경우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"최초 5일"을 "최초 15일"로 하며, 같은 호 단서 중 "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"를 "대기업인 경우에는 제외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적용례)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6조(지급 기간 등) ① 제75조	제76조(지급 기간 등) ①
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	
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	
대하여 「근로기준법」의 통상	
임금(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	
으로 산정한다)에 해당하는 금	
액을 지급한다.	
1.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에 따	1
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	
·사산휴가 기간. 다만, <u>우선</u>	<u></u> 「대・
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	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
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(한	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
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	대기업(이하 "대기업"이라 한
한 경우에는 75일)을 초과한	<u>다)인 경우</u>
일수(30일을 한도로 하되, 한	
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	
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	
한다)로 한정한다.	
2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	2
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	

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	-산
휴가 기간 중 <u>최초 5일</u> .	다
만,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	장
이 <u>우선지원 대상기업인</u>	경
우에 한정한다.	

②・③ (생 략)

<u>최초 15일</u>
대기업
인 경우에는 제외한다.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